

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

농림부

〈 기본방향 〉

- 특별방역기간 설정 및 기본적인 국경검역·국내 방역대책은 2004/2005 동절기 특별방역대책을 계승
- 2005. 11~2006. 2월까지 「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」으로 설정, 전국 방역기관별 상황실 운영 등 특별방역 추진
- 국제적으로 가장 위험한 전파요인으로 지목된 철새에 대한 대처 및 교육·홍보는 특별방역기간 이전에 추진

■ 국경검역 : 수입 가금육 검사 및 공항·항만 검색·소독 강화

1. 수입 가금육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

- 열처리된 가금육 수입이 허용된 발생국가(중국·태국)에 대한 검역 강화 및 국제 발생동향 파악 지속 실시
 - 승인된 수출작업장(중국 59개소, 태국 44개소)별로 최초 수입시 3회 연속 검사, 이후 10회마다 검사(검사기간 30일 이상 소요)
- 모든 가금육 수입국을 대상으로 수입 가금육 모니터링 실시
 - 수입건의 20% 비율로 바이러스 검사 실시(검사비율은 역학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)
 - ※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국에 대한 규제적 차원의 정밀검사는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으므로 모니터링 차원의 검사를 실시

2. 공항·항만 검역관 및 검역탐지견 증원배치를 통한 해외여행객 휴대품 검색 및 축산물 반입금지 홍보 강화

■ 국내방역 : 닭·오리·철새 예찰활동 강화 및 접촉 차단

1. 집중관리대상지역(21개소)의 닭·오리 임상관찰 강화

- 시·군 주관으로 지역축협, 방역본부, 양계·계육·오리협회 시·군지부 등과 농가를 분담하여 3일 간격으로 전 농가 전화 확인
 - 기타지역은 시·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(최소 7일 간격)
- 시·도지사는 집중관리대상지역의 예찰 결과를 주간단위로 취합하여 금요일 17:00까지 농림부에 보고
 - 단, 의심환축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이동통제 등 긴급방역 조치
 - ※ 집중관리대상지역 : 울산(울주), 경기(이천·양주/안성·평택·포천·고양·김포·용인·화성), 충북(음성·진천/청원), 충남(천안·아산/연기), 전남(나주/영암·함평), 경북(경주), 경남(양산)

2. 철새·뒷새·오리에 대한 예찰 확대 및 조기실시

- 조류인플루엔자 조기색출을 위해 주요 유입원으로 추정되는 철새와 주요 잠복감염원인 오리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 [별첨 1]
 - 철새 분변검사는 철새 도래시기를 고려하여 조기에(10월부터) 실시하고 오리 혈청검사는 철새로부터 전파 가능성이 있는 시기(11월)부터 검사
 - 오리 혈청검사(900농가 20,000건) 및 철새 분변검사(24개소 2,400점)
- 파주·철원·고성의 민통선 지역의 야생조류 폐사체(100수) 및 분변(500점) 일제조사 실시(11월 초) [별첨 2]

3. 방사 오리·토종닭 방역관리 지도

- 철새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육장 사육 또는 사료저장소 등 그물망 설치 등을 지도
 - 오리협회·토종닭연합회에서 방사 오리·토종닭 사육현황 조사실시

■ 교육·홍보

1.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주의보 발령 등 경각심 고취

- 발생주의보 발령(10월중, 검역원) 및 전문지 홍보(방역본부)
- 문자서비스(SMS) 및 ARS 서비스를 이용한 농가 직접 홍보
 - 시·도(시·군)별 자체 홍보 및 검역원의 일괄 홍보 실시
 - ※ 시·도(시·군)별로 SMS 및 ARS 홍보를 위한 닭·오리 사육농가 연락처를 파악하여 검역원에 제출 (10. 14까지)

2. 야생조류와 사육가금의 차단조치 홍보

- 철새와 가금이 접촉할 수 있는 실증적 경로에 대한 정보 제공
 - ※ 2004년 국내 발생당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철새가 직접 농장에 침입하는 것이 아니고, 밤에 먹이를 찾아 인근 경작농가에 침입하여 텃새와 접촉하게 되어 텃새가 전파하는 것으로 추정
- 철새·텃새와 가금의 접촉 방지를 위한 조치 등 홍보
 - 축사·사료창고·분뇨처리장내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, 그물망 설치, 비닐 포장 등 차단조치
 - 가금 사육농가의 철새도래지 접근 자제 및 부득이 방문한 때에는 신발 세척·소독후 귀가토록 홍보
 - 축산농가의 중국·태국·베트남·인도네시아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여행 자제 홍보
 - ※ 농협중앙회는 농림부와 별도로 자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특별방역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 실시

3. 조류인플루엔자 예찰·진단용 도감(圖鑑) 제작·배포

- 전문가용으로 예찰·진단 표준화를 위한 도감 제작·배포(검역원)

[별첨 1] 철새·오리 특별예찰계획

1. 추가 검사 계획

- 오리 혈청검사 : 20,000건
 - 종오리(3,000건), 육용오리(7,000건), 도축장 출하 육용오리(10,000건)
- 철새도래지 분변검사 : 2,400점
 -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4개 지역(지역별 100점)

2. 세부추진절차

1) 오리 혈청검사(900농가 20,000건)

- 검사시기
 - 종오리농장(50농가 3,000건) : 11. 21~12. 2(2주간 전 농장 일제검사 실시)
 - 육용오리농장(350농가 7,000건) : 11월~2006. 1월(검사물량 균등분할)
 - 도축장출하오리(500농가 10,000건) : 11월~2006. 1월(검사물량 균등분할)

■ 채혈 및 검사방법

- 종오리노장 채혈은 계군별로 20수 이상씩 균등 분할하여 채취
 - 산란을 감소, 사료섭취 감소 등이 있는 계군을 우선적으로 채취
- 육용오리농장 및 도축장 출하오리는 농장당 20수 이상 채취
- 채혈 개체당 최소 3ml 이상 채혈
- 채혈시료는 시·도 가축방역기관에서 AGP 검사를 실시하고, 필요시 검역원(조류질병과)에 신속하게 확인 검사 의뢰

〈확인검사 의뢰시 시료 송부〉

- 해당농장 사육사별 20수 이상의 재채혈 시료
- 동일개체의 분변 swab 시료
- 폐사오리가 있는 경우 폐사체(5수 이상)
- 방역실시요령 별지 제3호 소식의 시료채취내역서 동봉

2) 철새도래지 분변검사(24개소 2,400점)

■ 검사시기

- 1차 검사(1,200점) : 10월~11월(철새도래지별 50점)
- 2차 검사(1,200점) : 12월~2006. 1월(철새도래지별 50점)

■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 방법

- 철새도래지 주변의 신선한 분변을 채집하되, 10점의 분변을 1개 시험관에 채집후 검역원(조류질병과)에 검사 의뢰
- ※ 시료채취 지역·주소, 시료내역(시료수·포장수량), 시료채취자(연락처) 및 특이사항(철새의 종류 등)을 기록하여 분변시료와 함께 송부

〈요약〉

구분	검사시기	시료채취방법	검사기관
□ 오리 혈청검사 • 종오리 • 육용오리(농장·도축장)	11. 21~12. 2 11월~2005. 1월	계군별 혈액 20수 이상 농장당 혈액 20수 이상	시·도 가축방역기관 ※필요시 검역원에 확인검사 의뢰
□ 철새도래지 분변검사 • 1차 검사 • 2차 검사	10월~11월 12월~2006. 1월	철새도래지별 분변 50점 철새도래지별 분변 50점	검역원(조류질병과) ※시료채취협조 : 시·도 가축방역기관

2. 검사결과 보고

- 수의과학검역원은 종오리·육용오리·도축장출하오리 및 철새도래지(1·2차) 등 세부 검사대상 별로 검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·도의 검사실적을 취합하여 농림부에 보고

[별첨 2] 민통선 지역 야생조류(털새) 일제조사 계획

- 기간 : 2005. 11. 7~11. 11(5일간)
- 시료채취기관
 - 수의과학검역원 및 경기·강원도 가축방역기관 공동 시료채취
 - ※ 민통선 지역 출입허가 및 야생조류 포획허가는 추후 국방부(합동참모본부)와 환경부(자연자원과)에 협조 요청 계획
- 시료채취장소 : 민통선 지역(파주·철원·고성)
- 수거대상 시료
 - 털새 등 야생조류 : 폐사체를 수거하거나 포획(100수 이상)
 - 야생조류의 분변(500수 이상)
 - 신선한 분변(건조된 것은 불필요)을 은행 씨알 크기로 채취하되, 50ml 코니칼 튜브 1개에 5수의 분변을 투입
 - 시료가 누출되지 않도록 마개를 잘 닫고, 시험관 외부를 소독한 다음 운송중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
- 검사의뢰
 - 검사시료는 수의과학검역원(조류질병과)에 인편으로 직접 송부
 - 시료채취 일자·장소를 명기하여 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 의뢰
 - ※ 시료운송은 경기·강원 가축방역기관에서 검역원으로 당일 운송 협조
 - 고성(강원도 북부지소), 철원(강원도 본소), 파주(경기도 서부지소)
- 검사기관
 - 수의과학검역원에서 부검·바이러스검사 등 병성감정 실시 C